

**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장항항)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**

- 요약문 -

2020. 3.



해양수산부

제1장 계획의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가. 계획의 배경

-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구현을 위해서는 항만을 둘러싼 대내외 항만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, 변화여건을 고려한 항만개발방향 정립, 항만공간 및 항만시설의 다목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.

장항항

- ① 항만운영 효율화 및 복합항만으로의 장항항 개발
- ② 전용 준설토투기장 설치로 항로 유지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, 부지 확보로 이용성 다각화

나. 계획의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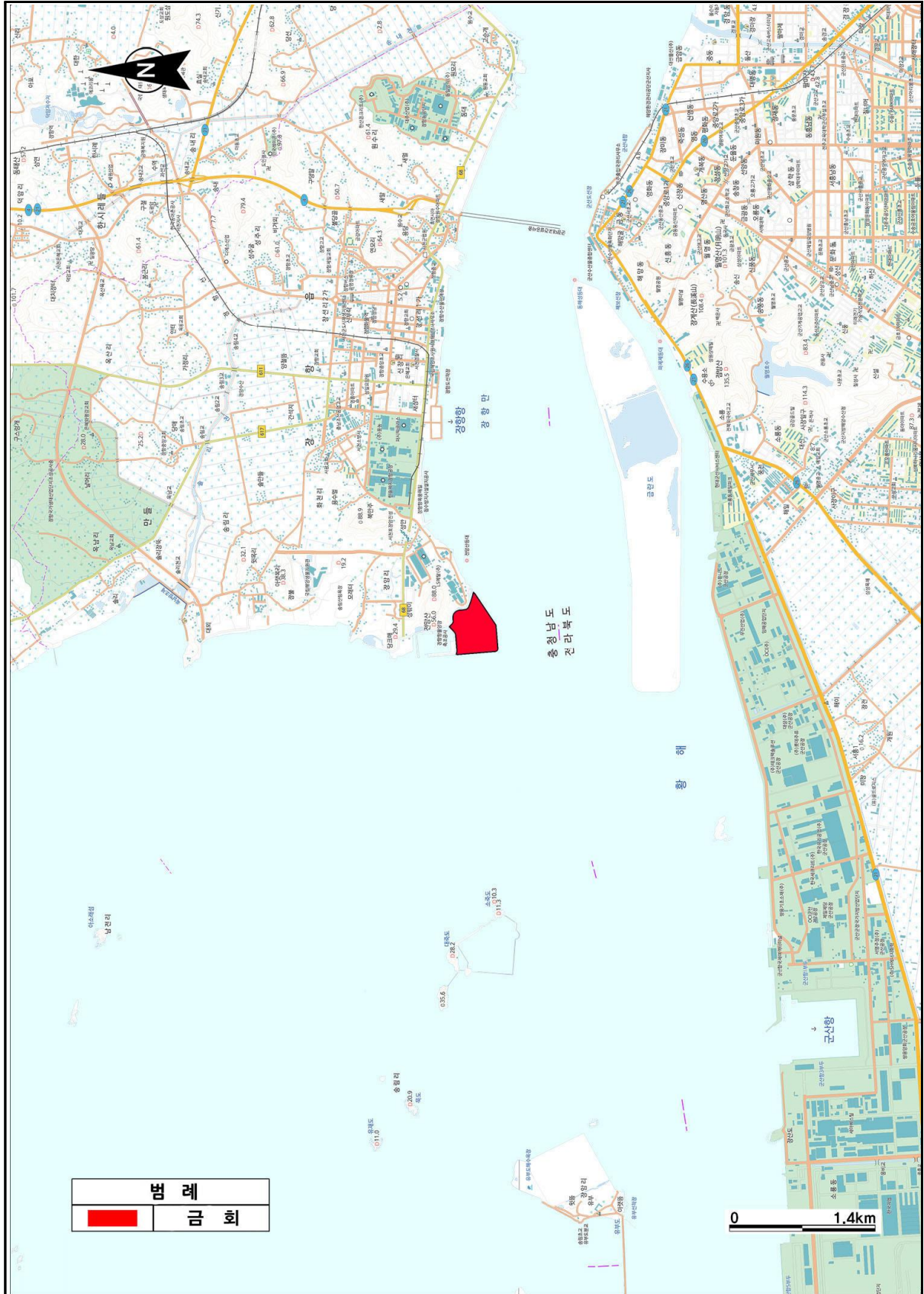
- 본 계획은 2016년 고시된 「제3차(2016~2020)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」 수립 후 기간경과에 따른 국내·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고,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, 「항만법」에 의거 「제4차(2021~2030) 전국항만 기본계획(장항항)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장항항

- ① 장항항 해상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항만기능 강화와 부두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, 지사체간 상생과 균형발전, 서천지역의 사회·경제적 인프라와 부합한 시너지 효과로 지속발전 가능한 복합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획 수립

다. 개발방향

- 지속적인 준설토를 통해 선박 입·출항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제고
- 항만시설용부지를 통한 항만환경 개선 및 복합항만 조성



(그림 1.1-1) 계획대상지 위치도(지형도)

1.2 계획수립 및 협의근거

가. 항만기본계획 수립

- 본 계획은 「항만법」 제5조(항만기본계획의 수립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「제4차(2021~203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장항항)」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〈표 1.2-1〉 항만기본계획 수립 법적근거

구 분	내 용
항만법	제5조(항만기본계획의 수립) ①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</u> ② <u>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
	제8조(항만기본계획의 고시)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※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의제사항

- 「항만법」 제8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결정·고시한 것으로 본다.

〈표 1.2-2〉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과의 관계

구 분	내 용
항만법	제85조 (관련 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. 1. <u>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</u>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과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해당되어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제2항,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[별표 2]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.
- 제4차 항만기본계획(장항항) 전체계획 규모 및 금회 협의 대상규모는 179,200㎡이고, 타법률(항만법, 신항만건설촉진법 등)에 의거하여 기 협의된 사항(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등)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[별표 2] 비고 3.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, 장항항은 해당되지 않음

〈표 1.2-3〉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내 용
환경영향평가법	<p>제9조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4.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(이하 "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"이라 한다)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2. 개발기본계획: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</p> <p>가.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</p>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	<p>제7조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)</p> <p>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(이하 "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"이라 한다)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.</p>

〈표 1.2-4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라. 항만의 건설	5)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	「항만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차. 개간·공유수면 매립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
비고1.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.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.

3.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**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.**

나.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**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**

자료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[별표2]

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가. 추진경위

- 1938. 01. 01 : 장항항으로 개항
- 1962. 01. : 1종 지정항으로 승격
- 1989. 12. : 장항 어선물양장 준공(883m)
- 1995. 04. 17 : 「제1차(1992~2001) 항만기본계획」 고시
- 2001. 12 : 장항항 신항부두 준공(330m, 1만톤급 2선석)
- 2001. 12 : 「제2차(2002~2011) 전국무역항 기본계획」 고시
- 2002. 12 : 군·장항 기본계획(변경)
- 2006. 12 : 「제2차(2006~2011)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」 고시
- 2009. 12. 11 : 장항항 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 협의
(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-3206)
- 2010. 06. 15 : 「장항항 기본계획 변경」 고시
- 2010. 07. 28 : 장항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
(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-4688)
- 2010. 11. 12 : 장항항 정비공사(물양장) 착공
- 2011. 07. 29 : 제3차(2011~2020) 항만기본계획고시
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402호】
- 2014. 07. 21 :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착수
- 2016. 09. 29 :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
- 2017. 11. 01 : 장항항 정비공사(어선물양장, 호안정비공) 준공
- 2018. 06. 26 : 제4차(2021~2030)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
- 2019. 10. 02 : 제4차 전국 항만(무역항)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
- 2019. 12. 23 :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위촉 및 평가준비서 심의요청
(해양수산부 → 관계기관 및 전문가, 주민대표 등)【항만정책과-3945】
- 2020. 1. 23 ~ 2. 5 :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결정내용 공개
- 2020. 03. 20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제출(해양수산부→관계 행정기관)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·공고 【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-602호】
※ 공람기간 : 2020. 03. 09. ~ 2020. 04. 03(20일간)

나. 향후 추진계획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
-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
-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
- 제4차(2021~2030) 전국무역항 기본계획(장항항) 고시

1.4 계획의 내용

가. 계획 명 : 제4차(2021~203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장항항)

나. 계획 수립기관 : 해양수산부

다. 협의 기관 : 환경부

라. 계획의 범위

1) 시간적 범위

- 기준연도 : 2021년
- 목표연도 : 2030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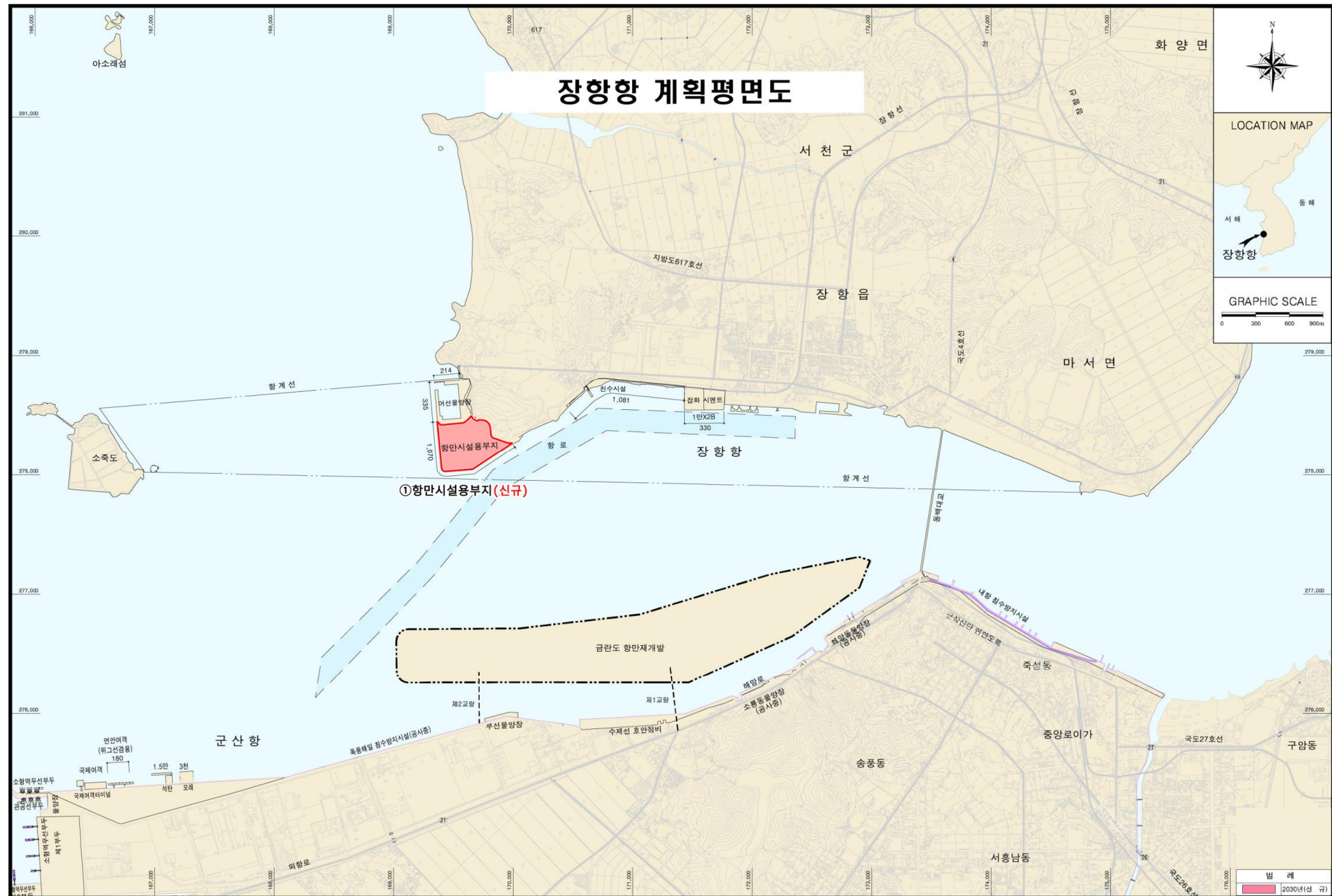
2) 공간적 범위

-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 일원

마. 계획의 규모

- 계획면적 : 179,200㎡
- 외곽시설 : 1,070m
- 매립반영 요청면적 : 179,200㎡

구 분	협의대상 규모		전체 계획규모	비 고	
	기협의	금 회			
계획면적	-	179,200㎡	179,200㎡	신규	①
외곽시설	-	1,070m	1,070m	신규	①
매립면적	-	179,200㎡	179,200㎡	신규	①
기타시설	○ 준설 1식				



(그림 1.4-1) 제4차(2021~203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장항항) 계획평면도

제2장 지역개황

보호구역 명칭	근거법령	지정 현황
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 관리지역	습지보전법 제8조	○1개소 -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 약 0.5km 이격
야생생물 보호구역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	○2개소 -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약 4km 이격
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	○해당사항 없음
생태·경관보전지역	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	○해당사항 없음
시도 생태·경관보전지역	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	○해당사항 없음
자연공원	자연공원법 제4조	○해당사항 없음
백두대간 보호지역	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	○해당사항 없음
특정도서	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	○1개소 -계획대상지와 22km 이격거리에 오령도 위치
약취관리지역	약취방지법 제6조	○해당사항 없음
상수원보호구역	수도법 제7조	○해당사항 없음
배출허용기준(폐수) 적용을 위한 지역	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	○계획대상지는 “가” 및 “나”지역
수질오염총량관리구역	-	○해당사항 없음
환경보전해역	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	○해당사항 없음
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	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1조	○해당사항 없음
해양보호구역	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	○해당 -서천 서면, 비인면, 중천면, 유부도 일대 서천갯벌 위치
패류생산지정해역	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	○해당사항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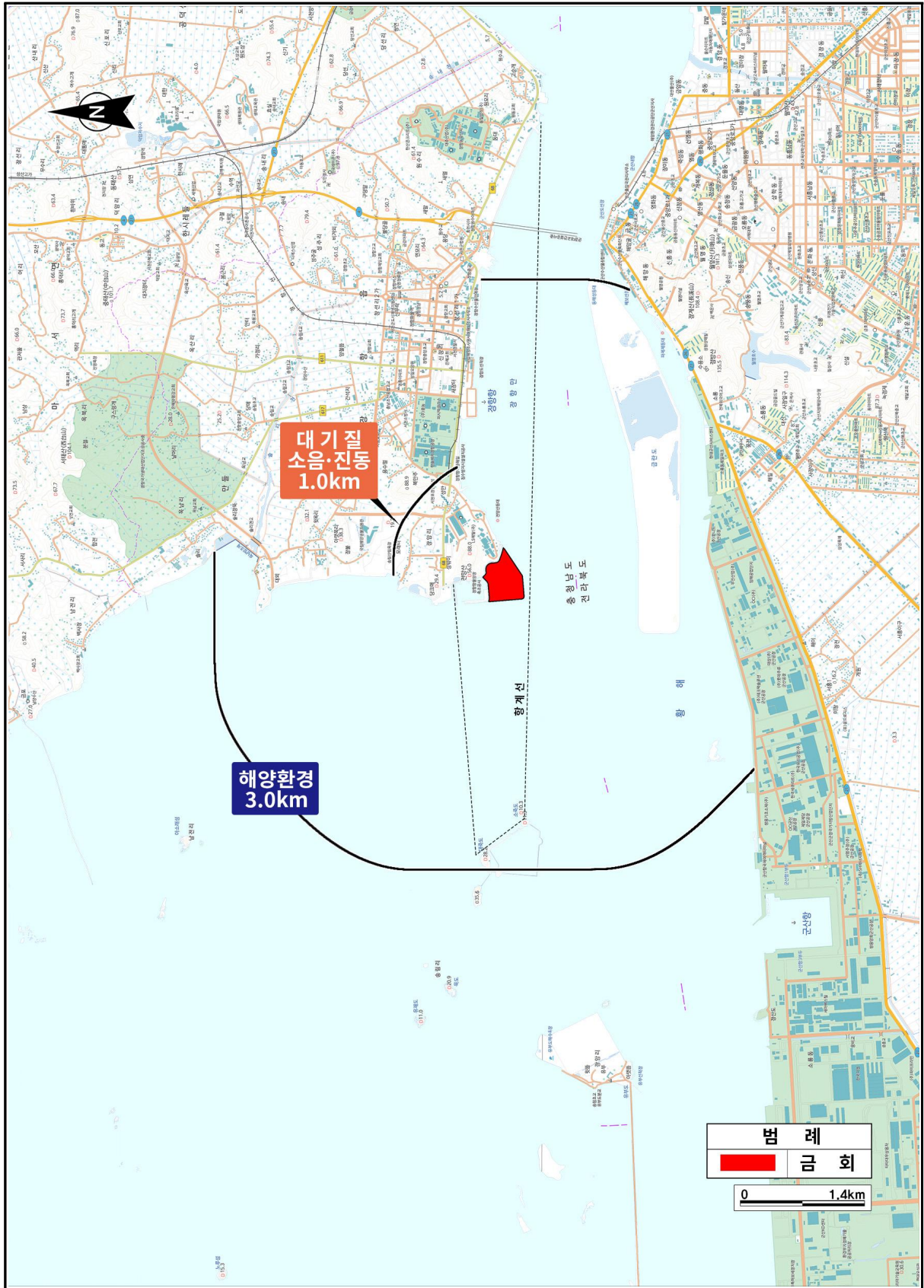
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선정

3.1 평가항목의 설정

구 분	평가항목	결정 결과	선 정 사 유	비고	
계획의 적정성	○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선정	○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 및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필요	○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	
	○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선정	○ 계획비교, 수요·공급 및 시기·순서에 대한 대안 검토	○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기타	
입지의 타당성	자연환경의 보전	선정	○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 여부	○ 육상 동·식물상	
			○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영향 및 훼손의 가능성 여부	○ 해양환경 (해양동·식물상)	
			○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여부		
	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선정	○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○ 학술적·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포함 여부	○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
			○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지형 변화		
	수환경의 보전	선정	○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○ 자연경관 현황 파악	○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
			○ 생태적·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 여부	○ 생태적·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 여부	
생활환경의 안정성	선정	○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·간접적인 영향 여부	○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·간접적인 영향 여부	○ 해양환경 (해양물리, 해양수질·퇴적물)	
		○ 해양물리, 해양수질 등 변화			
	선정	○ 환경기준 부합성	○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	○ 대기질(기상)	
		○ 대기질, 소음·진동, 해양수질 등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	○ 소음·진동		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	선정	○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○ 계획대상지 주변 환경기초시설 파악	○ 지역개황	
		○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○ 계획대상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적정 방안 검토	○ 친환경적 자원순환	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	선정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정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	○ 온실가스	
	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

3.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구 분	평가항목	평가범위	평가방법	비고
계획의 적정성	○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○ 충남 서천군	○ 상위 행정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	○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
	○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○ 계획대상지	○ 3개 이상의 대안 검토	○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대안
자연환경의 보전	○ 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3km	○ 해양동·식물상 현황 및 계획수립으로 인한 영향 예측	○ 해양환경 (해양동·식물상)
	○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○ 지형 및 지질 현황 조사 ○ 지형변화 및 지반안정성 검토 ○ 재료원 수급계획 검토	○ 지형·지질
	○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○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검토	○ 경관
	○ 수환경의 보전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해역 - 해양환경 경계기준 3km	○ 해양수질·저질 현황 조사 ○ 공사시 부유사 확산 수치모형실험 ○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수유동, 퇴적변화 예측	○ 해양환경 (해양물리, 해양수질·저질)
입지의 타당성	○ 환경기준 부합성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- 대기질 경계기준 1km - 소음·진동 경계기준 1km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환경질 현황 조사 ○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및 NO ₂ 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○ 주변 정온시설 파악 및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·진동 영향 검토	○ 대기질(기상) ○ 소음·진동
	○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○ 계획대상지 주변 환경 기초시설 파악	○ 지역개발
	○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○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방안 검토 ○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(연료 등)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	○ 친환경적 자원순환 ○ 온실가스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계획대상지	○ 운영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검토	○ 토지이용



(그림 3.2-1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

제4장 대안의 설정

4.1 대안 설정 개요

- “대안”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, 추진전략과 방법, 수요와 공급, 위치와 시기,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.
-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은 계획비교, 수단방법, 수요·공급, 입지, 시기순서,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. 본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안 설정은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, 2018.12.12.)」[별표4]에 따라 설정하였으며, 다음 표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 중 「계획비교», 「입지」를 선정하였다.

〈표 4.1-1〉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
대안종류	대안 선정방법
계 획 비 교	○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
수 단 · 방 법	○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
수 요 · 공 급	○ 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
입 지	○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
시 기 · 순 서	○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
기 타	○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

자료 :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, 2018.12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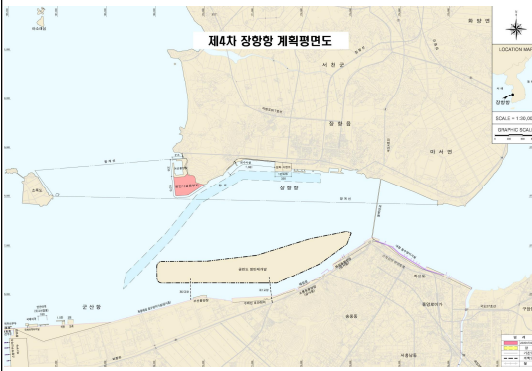

〈표 4.1-2〉 본 계획의 대안 설정

대안종류	대안의 설정
계 획 비 교	○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 - 2019년 기준으로 장항항의 현재 상태 ○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Action) -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
입 지	○ 제1안 : 「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」에 반영된 계획안 ○ 제2안 : 장항항 접안시설 해역 설치안 ○ 제3안 : 소죽도 해역 설치안

4.2 대안별 비교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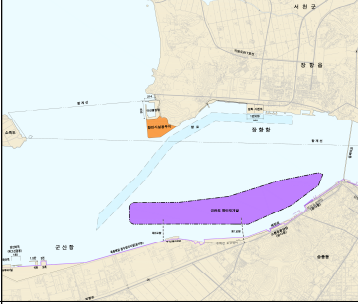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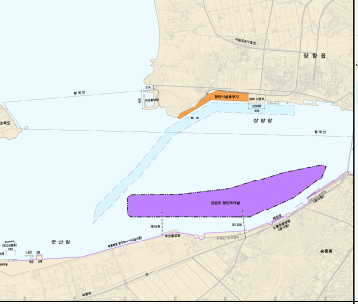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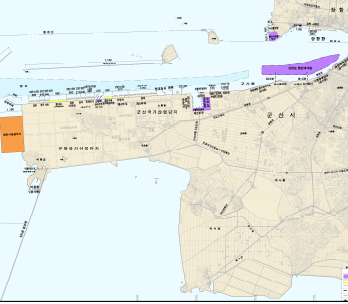
가. 계획비교 대안

- 계획대안비교의 경우 계획대상지로 선정하였을 경우(Action)와 계획대상지로 미선정하였을 경우(No Action)를 비교하였으며 주변 개발여건,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하였다.

구 분	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Action)	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
평 면 도		
개 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항항 항로 유지준설 전용 투기장 확보 통한 효과적 화물처리기능 강화 ○ 토지조성 통한 장항항 항만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산항 지원항만으로서의 장항항 항만기능 유지
개발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곽시설(1,070m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만시설용부지 : 1,070m(호안) ○ 부지조성(179,200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만시설용부지 : 179,200㎡ ○ 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준설 및 매립 : 1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준설 및 매립 : 1식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항항 전용 투기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준설토 처리 및 항만 서비스 향상 ○ 항만시설용부지, 어항구 및 항만재개발구역 연계 개발로 복합항만으로서 발전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 수준의 항만기능 유지로 투자비 절감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초기 투자비 소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로 유지준설토 안정적 처리 불가로 항만 이용 불편 및 물류비 가중 등 손실 발생
채 택 안	○	

나. 입지

- 입지 대안의 경우 장항항 서측 신물양장에 인접하여 준설토 투기장 계획(대안1)과 장항항 화물 부두에 인접한 친수호안 전면해상에 준설토 투기장 계획(대안2), 군산항 서측 준설토투기장 계획(대안3)을 비교하였으며 주변 개발여건,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하였다.

구 분	대안1	대안2	대안3
평 면 도			
개 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항항 서측 신물양에 인접하여 준설토 투기장 계획 ○ 장항항 내 항로 유지준설토 투기 완료 후 항만시설용 부지로 활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항항 화물부두에 인접한 친수호안 전면 해상에 준설토 투기장 계획 ○ 장항항 내 항로 유지준설토 투기 완료 후 항만시설용 부지로 활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산항 서측에 준설토 투기장 계획 ○ 군산항과 장항항 내 항로 유지준설토를 투기 후 항만시설용 부지로 활용
개발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곽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안 1,070m ○ 항만시설용부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만시설용부지 179천㎡ ○ 수도용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,326천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곽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안 1,540m ○ 항만시설용부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만시설용부지 180천㎡ ○ 수도용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,200천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곽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안 4,170m ○ 항만시설용부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만시설용부지 2,146천㎡ ○ 수도용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,044천㎡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 외곽에 설치하여 공사 시 통항선박 간섭 최소화 ○ 준설토 평균 운반거리 1km로 투기 효율성 우수 ○ 장래 장항항 주변 시설과 연계한 토지활용 편익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설토 평균 운반거리 0.7km로 투기 효율성 우수 ○ 장래 장항항 주변 시설과 연계한 토지 활용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산항에 설치하여 공사 시 통항선박 간섭 배제 ○ 투기장 조성 추가비용 절감 ○ 장항항 내 환경오염 최소화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기장 조성 추가비용 발생 ○ 항내 환경오염 추가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석 및 항로에 인접 설치하여 통항선박 지장 가능 ○ 항내 환경오염 추가 발생 ○ 물동량 증가 시 선석 확장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설토의 원거리 운반(25km)으로 투기비용 약 5배 이상 증가 ○ 준설토 투기 시 항내 혼잡 가중 ○ 준설토 투기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저하
채 택 안	○		

제5장 결 론

- 본 계획은 2016년 고시된 「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(2016~2020)」 수립 후 기간경과에 따른 국·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법에 의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구현을 위해서는 항만을 둘러싼 대내외 항만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, 변화여건을 고려한 항만개발방향 정립, 항만공간 및 항만시설의 다목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.
- 본 과업의 시행에 따라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토사 확산 영향, 매립공사시 비산먼지 발생, 건설장비의 소음발생과 해상구조물 설치 및 준설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 된다.
- 그러나, 각 영향에 따라 공사시 오탉방지막 설치, 필터매트 포설 등 현실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, 향후 단위개발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예정해역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.